

제4차산업경제위원회
2012.12.13(목) 17:00

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전문위원 송장섭

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김도경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2년 12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12월 5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, 지위향상,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사항에 '귀농 및 이주여성' 포함(안 13조)
- 나.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(안 제1조, 안 제9조 등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, 지위향상,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